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87 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은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공공자산으로서 사용에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특히 무분별한 영리적 이용을 방지하고, 상징물 사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 이에 영리 목적 사용에 대한 정산·회계 감독, 사용료 징수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여 상징물을 체계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징물의 정의 및 명칭을 정비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상징물의 사용·관리 및 영리 목적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0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ho@korea.kr

라. 문 의 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하는데”를 “관리하는 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공공 목적 사용”이란 영리 목적 없이 시민의 보편적 참여가 보장되는 공익적 행사 또는 활동에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영리 목적 사용”이란 상징물을 사용하여 참가비・입장료・판매대금 등 직접적인 수익을 얻거나, 상업적 홍보・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상징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조(市鳥) :”를 “새:”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화(市花) :”를 “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목(市木) :”를 “나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심벌마크 :”를 “상징표장(심벌마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로고타입 :”을 “상징글자(로고타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엠블럼 :”을 “문장(엠블럼):”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캐릭터 :”를 “상징조형물(캐릭터):”로 한다.

6. 도시 슬로건: 별표 3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들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상징물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상징물 사용 허가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입·지출 내역의 시 보고 의무

2. 참가비·입장료 등 수익금의 상한 설정 및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시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4. 위탁 조건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상징물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제7조제4항(종전의 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리 목적 사용으로서 시민의 보편적 참여를 제한하거나 시의 신뢰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상징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정산 보고 및 회계 감독) ① 영리 목적으로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입·지출 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산 보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외부 회계법인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

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따른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에 따른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영리 목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따라 사용허가”를 “따른 사용허가”로, “사용하는”을 “사용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으로, “관련”을 “관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7조의2에 따른 정산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향후 3년간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심 벌 마 크”를 “상징표장(심벌마크)”로 한다.

별표 1 본문 중 “심벌마크”를 “상징표장(심벌마크)”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로고타입”을 “상징글자(로고타입)”으로 한다.

별표 2 및 같은 표 중 “국문로고타입”을 각각 “국문상징글자(로고타입)”로 하고, 같은 표 및 같은 표 중 “중문로고타입”을 각각 “중문상징글자

(로고타입)”로 하며, 같은 표 중 “영문로고타입”을 “영문상징글자(로고타입)”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브랜드 슬로건”을 “도시 슬로건”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엠 블 럼”을 “문장(엠블럼)”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캐 릭 터”를 “상징조형물(캐릭터)”로 한다.

별표 5 본문 중 “캐릭터는”을 “상징조형물(캐릭터)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리하는 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공공 목적 사용”이란 영리 목적 없이 시민의 보편적 참여가 보장되는 공익적 행사 또는 활동에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영리 목적 사용”이란 상징물을 사용하여 참가비·입장료·판매대금 등 직접적인 수익을 얻거나, 상업적 홍보·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

1. 시조(市鳥) : 파랑새 2. 시화(市花) : 복숭아꽃 3. 시목(市木) : 소나무 4. 심벌마크 : 별표 1 5. 로고타입 : 별표 2 6.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 7. 엠블럼 : 별표 4 8. 캐릭터 : 별표 5	1. 새: ---------- 2. 꽃: ---------- 3. 나무: ---------- 4. 상징표장(심벌마크): ---------- 5. 상징글자(로고타입): ---------- 6. 도시 슬로건: 별표 3 7. 문장(엠블럼): ---------- 8. 상징조형물(캐릭터): ----------
제5조(상징물의 관리) 시장은 상징물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상징물의 관리) ① ---------- ---------- 관리해야 ----------. ②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들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상징물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료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상징물 사용 허가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①·② (생 략)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입·지출 내역의 시 보고 의무 2. 참가비·입장료 등 수익금의 상한 설정 및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시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4. 위탁 조건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상징물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제7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등) ①·② (생 략)	제7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영리 목적 사용으로서 시민의 보편적 참여를 제한하거나 시의 신뢰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 설>	4.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상징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④ 시장은 상징물의 사용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관리대장을	<삭 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정산 보고 및 회계 감독) ① 영리 목적으로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입·지출 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산 보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외부 회계법인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상징물의 사용허가의 방법・기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에 따른다.	제8조(사용료 등) ① ---------- ---------- ----------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 따른 사용허가--------------------- 사용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 관계 ----------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 ② 시장은 제7조의2에 따른 정산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향후 3년간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따른 상징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43조의5(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20조제3항 본문 및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

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저작권등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다.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29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의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기간 동안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방법은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다.
제43조의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지식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8(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

15. 6. 22., 2018. 10. 16., 2021. 12. 28., 2024. 1. 9.>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에 지식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제43조의9(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제21조 또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등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의6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경우에는 이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현미

[붙임 3]

현 행 조 례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정책기획관), 044-300-215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5. 9. 30.)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조(市鳥) : 파랑새
2. 시화(市花) : 복숭아꽃
3. 시목(市木) : 소나무
4. 심벌마크 : 별표 1
5. 로고타입 : 별표 2
6.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개정, 2023. 1. 5.>
7. 엠블럼 : 별표 4<개정, 2023. 1. 5.>
8. 캐릭터 : 별표 5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5조(상징물의 관리) 시장은 상징물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등) ① 제3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상징물을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변경·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취소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변경·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사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3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④ 시장은 상징물의 사용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30.)

제8조(사용료 등) 상징물의 사용허가의 방법·기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에 따른다.(개정 2015. 9. 30.)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따른 상징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